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79
----------	------

2025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유만희 의원 외 32명
-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유만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출산·육아 환경 변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구 확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상에 음수대 설치 대상 외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규정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수대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공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 설치 규정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나.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아리수본부(이하 “본부”)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공원 및 광장 등에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운영 현황>

(2025. 7. 31. 기준)

구분	합계	실내					야외
		학교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	지하철 등	공원
개소	2,801	1,147	171	4	417	3	1,059
음수대	24,386	20,510	439	14	1,633	5	1,785

- 공원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중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이 어렵거나,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한 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휠체어 이용자 등이 사용하기 불편한 아리수 음수대 사례>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설,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공원·광장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안 제6조제3항은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수도꼭지 음용률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음수대 위치,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수도꼭지 높이와 회전 공간 확보, 음수대 주변 바닥 재질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설치) ①·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 인을 적용하여야 한다.</u>